

서 면 답 변 서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질의위원 | 신교선 의원 이수현 의원 | 소 속 | 평 창 군 의 회 |
| 답 변 자 | 평 창 군 수 (자치행정과장) | 일 자 | 질의 : 2001년6월25일 답변 : 2001년6월25일 |
| 회 의 | 제86회평창군의회(정례회)제1차 예결특위 | | |
| <p>【 질의요지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의 관련 자료 제출 | | | |
| <p>【 답변 요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의 관련 자료 : 불임 | | | |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기획13310-42 |
| 보존기간 | 3년 |
| 결재일자 | 2001. 8. 6 |

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기안 | 담당 | 실장 | 부군수 | 군수 |
| 이석권 | (인) | 김영하 | 김영하 | 김영하 |
| 협조 | | | | |

초·중·고교 『교육관련경비』 지원계획

평 창 군
(기 획 실)

초·중·고교 『교육관련경비』 지원계획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「시·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고등학교이하 학교에 대해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시·군에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.
- 또한, 교육재정 보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일선 초·중·고교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다수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지원근거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
-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

□ 지원대상사업

-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-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-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-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
□ 교육경비보조 불가능 단체

-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단체
- 국고보조금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단체
-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

⇒ **평창군의 경우, 교육경비보조 가능단체임.**

□ 교육관련경비 지원계획

- 교육재정보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삭제되고, 시·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종전 도지사의 보조사업에 대한 승인제한요건이 완화되면서
 - 각급 초·중·고교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접수되고 있음
- 향후,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요청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사업제한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후 교육청과 협의.
 - 지원대상학교 선정후 **매년 5억원 범위안에서** 당초예산에 반영 지원

○ 교육청과 사전협의,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수립

- 각급 학교별로 보조금 요청시 무분별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및 지원액 등에 논란 우려
- 교육청과 사전 협의, 각급 학교별 시설 및 향후 시설신축계획 등 시설물 조사로 지원계획 수립

○ 보조 지원액 결정시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 분석

- 사업규모, 사업기간, 교육청 예산확보액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 분석후 자체 가용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

○ 보조금 집행에 따른 검사 및 철저한 정산실시

- 보조금지원 결정후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따른 실적 및 정산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 목적외 사용 여부 등 관리

○ 특히, 교육지원예산은 매 연도별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청과 협의 반영하고

- 추가지원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(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지원 불가)

- 「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」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제한 여부를 철저히 검토, 지원에 신중을 기해 운영

□ 각급학교별 보조금 신청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학 교 명 | 사 업 내 용 | 총사업비 | 신 청 액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| 3개교 | 2,430 | 680 | |
| 진부고등학교 | 다목적교실(1동) | 1,200 | 250 | 급식소 - 250 다목적 - 계획상 |
| 속사초등학교 | 급식소(1동) | 30 | 30 | |
| 평창중학교 | 다목적교실(1동) | 1,200 | 400 | |

- 금번 신청된 학교의 지원액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

- 각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, 사업비 확보여부, 사업기간 등 사실조사 실시(3월중)

-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, 각급 학교별 지원여부를 결정

-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규모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을 결정, 예산에 반영

※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, 관내 각급 학교로부터 다수의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추후 신청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해당여부와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 철저를 기해 시행.